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179
----------	-----

제출년월일 : 1996.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재해대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의 운용관리

- 도지사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 (국채, 공채 매입 또는 금융기관)으로 예탁관리하고
-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6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첨부 :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기금의운용관리) ①도지사는 법제63조및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50~70범위에서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및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충청북도건설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 : 충청북도치수과방재계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및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p>제63조(災害對策基金의 積立) ①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地方稅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제64조(災害對策基金의 運用등) ①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p> <p>②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p>	<p>제58조(재해대책기금의 용도)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등의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p>제59조(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따로 계좌를 설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p> <p>②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p>